

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



- 지정기간 : 2026. 01. 12.~2027. 01. 11.
- 지원대상 : 울산 남구 소재 사업장의 사업주, 근로자(퇴직자) · 구직자 등

구 분	지 원 내 용				문의	
지역 고용촉진 지원금	고용위기(선제대응) 지역으로 사업을 이전 · 신설 · 증설하고 해당 지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한 구직자를 6개월 이상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				울산고용 복지+센터 052)228-1924	
	지 원 수 준	1년간 월 임금(통상임금) 50% (대규모기업 1/3) 지원				
고용유지 지원금 (유급휴업)	매출감소 등의 사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휴업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					
	지 원 수 준	우선지원대상기업 : 휴업수당의 80% 대 규 모 기 업 : 휴업수당의 60~70%				
사업주 훈련지원	사업주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자체 또는 위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인적자원개발 지원 및 기업경쟁력 제고				한국 산업인력공단 울산지사 052)220-3237	
	훈 련 비 지 원 단 가	우선 지원대상기업 : 훈련비 단가 130% 1,000명 미만 기업 : 훈련비 단가 80% 1,000명 이상 기업 : 훈련비 단가 70%				
국민내일 배움카드	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				울산고용 복지+센터 052)228-1991	
	지 원 수 준	최대 500만원 (자부담율 : 0 ~20%)				
국민취업 지원제도 II	취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구직자 · 자립준비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				울산고용 복지+센터 052)228-1976	
	소 득 요 건	소득요건 면제 (지정일 전 3개월부터 실직한 자)				
직업훈련 생계비대부	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 지원				근로복지공단 울산남부지사 052)226-4251	
	대 부 한 도	1명당 2천만원				
생활안정 자금융자	저소득 근로자의 혼례 · 장례 · 양육 등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					
	소 득 요 건	4인 가구중위소득 1/2 이하 ('26년 월 325만원)				
	대 부 한 도	총 3천만원	융 자 기 간	최대 8년		
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	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생활안정 지원					
	한 도 액	1.5천만원				